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기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일정을 변경하는 한편,

정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함께 조정하여 관계부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일정 조정(안 제5조의2)”

- 1) 과학기술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적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2)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일정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일정과 일치하도록 함.
- 3) 정책 및 투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일정의 선후관계를 합리화하고 부처 행정부담을 경감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현실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16. ~ 11. 2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매년 1월 31일까지”를 “매년 3월 1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그 해 9월 30일까지”를 “그 해 10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그 해 11월 30일까지”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매년 1월 31일까지</u>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④ ----- ----- ----- ----- <u>매년 3월 15일까지</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u>그해 9월 30일까지</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 ----- ----- ----- <u>그해 10월 31일까지</u> -----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제5항의</u>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u>그해 11월 30일까지</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 <u>제6항</u> ----- ----- <u>다음 해 1월 15일까지</u>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834